



사슴농가의 폐수처리시설 관련 제도

최근 일부 지역 행정기관에서 사슴사육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배출 및 처리 시설 신고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록인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사슴은 여타 축종에 비해 분뇨배설량이 적고 조사료 위주 사육으로 인해 분뇨의 토양 및 수질오염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이 같은 환경 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는 움직임이다.

환경부는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 사슴을 제외시켰고, 1997년 시행령 개정시에도 양록업계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사슴을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유예한바 있다.

「사슴의 분뇨발생량은 1일 2.5kg/두(분 0.5kg, 뇨 2kg)으로 타 축종에 비해 적으며, 분(糞)은 수분이 60% 이하인 입자고형체로서 매일 수거하여 농지에 퇴비로 활용하고, 뇌(尿)는 목장의 토양에

흡수되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는 거의 없음」이 사슴을 축산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였다.

그러나 1999년 8월6일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시 사슴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안을 입안 예고했고, 본회의 강력한 반대로 축사면적 500m²(약 150평) 이상인 사슴사육 시설만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른 축종에서 적용되는 신고대상 기준(돼지 50m², 소 100m², 젖소 100m², 말 100m², 닭·오리·양 150m² 이상)에 비하면 사슴의 친환경적 특성을 상당부분 인정한 결과였다.

따라서 사슴사육 농가는 축사(지붕기준)면적 500m²(약 150평) 이상인 경우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된 것이다.

사슴축사도 5백m² 이상이면 신고대상

사슴사육 농가의 경우 대부분 영세규모인데다 소, 돼지, 닭 등과는 달리 비나 눈, 바람막이 시설의 필요성이 적어 축사(지붕)면적 기준으로 볼 때 법에서 정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반드시 관련절차를 거쳐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단독시설 : 보조 30%, 융자 7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4%, 액비저장시설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 가능하다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500m² 미만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경우에도 분뇨량을 감안, 일시저장시설 및 퇴비장 시설 등을 스스로 갖추어 무단방류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청 축산담당부서에 매년 초 신청하여 사업자 선정을 거쳐 차기 년도에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축사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축사내 창고면적은 제외되나 축사중간의 단순통로는 지도감독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축사로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사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표준 설계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설치

를 추진하는 농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시공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텁밥발효 축사의 경우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하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퇴비화 및 저장 액비화 방법도 처리시설 및 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사슴농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소개한다. 아울러 농림부의 '2002년도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 실시 요령'을 본 후에 전문 게재하고, 다음호에는 환경부 담당(생활오수과)자의 제도해설을 게재할 계획이다.(成)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고

〈법 제 24조의 2, 4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 14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제14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를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등”이라 함은 제2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라 함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안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안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본다.

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시행규칙 제 49조〉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9호 서식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4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



지의 변경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의 변경

3. 사업장의 명칭 변경

4.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변경전

2.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 2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제2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한 자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 1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 53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①법 제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면적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0〉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구조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점검·보수·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펌프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축산폐수의 배관은 막힘·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축산폐수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 한함).

9.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1월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 한함).

10. 저장액비화방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6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축산폐수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축산폐수를 6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축산폐수를 1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11.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상 축산폐수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인한 축산폐수의 유출이 없도록 비가림

시설 또는 축산폐수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시행규칙 제 56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설치 완료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합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를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⑧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한 자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법 제 28조 3항〉

③축산업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5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축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것
2.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축산폐수 배출량·시설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여 이를 최

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 월마다 1회 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경우 6월마다 1회 이상 각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 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 또는 퇴비화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목적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한국양특